■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6. 20.>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사유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 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록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